

여행사 제휴 계약서

No. :

본 제휴 계약서(이하 “본 계약”)은 아래 당사자들에 의하여 2022-11-28 에 작성되고 체결되었다.

갑: Ctrip Travel Holding (Hong Kong) Limited

을: TK TRAVEL

본 계약은 2024-11-27 까지 유효하다.

본 계약은 평등한 협상을 바탕으로 중국 홍콩의 적용되는 법률 법규에 따라 체결되었다. 양 당사자는 여하한 누락 또는 오해가 없이 본 계약을 자세히 검토하였고 본 계약의 조항에 동의한다.

본 계약은 여러 부의 부분을 체결하게 되고 각 부분은 동등한 효력과 구속력을 갖는다. 본 계약 및 그 첨부는 각 당사자가 서명 또는 날인 후 효력이 발생하고 각 당사자가 사전 달성한 모든 구두계약과 서면문서를 대체한다.

제1조 본 계약의 구성

아래 기재한 내용(적용될 경우)은 본 계약의 필요한 보충부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1. 관광지 사진을 사용할 수 있는 수권서, 씨트립 로고를 사용할 수 있는 수권서 및 확약서.
2. 본 계약 체결 후 양 당사자의 대표자 간의 이메일, 팩스, Vbooking 확인서.
3. 주문서 처리 매뉴얼 및 기타 관련 서류.
4. 본 계약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기타 이슈에 관한 보충계약.

제2조 제휴내용

1. 현지 관광 서비스: 을은 갑의 단체 관광 제품(예컨대 패키지 관광제품, 이하 “PTP”라 함)과 FIT 고객의 목적지 도시에서의 관광 일정에 대해 예매, 어렌지 및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PTP란 갑의 브랜드로 운영하고 있는 갑이 사전 일정을 디자인하고 갑 및/또는 갑의 여행 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최소 두가지 관광 서비스(교통, 음식, 가이드 또는 자문을 포함)를 제공하여 고객이 일시불로 비용을 지급하는 관광제품을 의미한다.
2. 자원 아이템의 재판매: 을은 버스/선박 티켓, 음식, 관광지 티켓, 오락 티켓 등을 포함한 그의 모든 여행 자원 아이템을 재판매하는데 동의한다.
3. PTP 재판매: 갑은 판매 대리인 역할로서 www.ctrip.com (모바일 어플 포함), 갑과 그의 특수관계사의 기타 판매 채널 및 갑이 지정한 기타 제3자 플랫폼에서 을 또는 그의 특수관계사 또는 을이 지정한 기관에서 디자인 및 제공한 PTP를 직접 재판매하거나 을의 PTP와 기타 제품 및 자원 아이템을 결부하여 새로운 PTP를 형성하여 판매하는데 동의한다. 을은 여행 조직 대리인(이

하 “TOA”)으로서, 을이 소유하거나 을의 브랜드로 운영되는 모든 제품을 포함하여 PTP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여행 중 모든 TOA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제3조 권리와 의무

A. 갑의 권리와 의무

1. 갑은 을의 판매 대리인으로서 자신의 명의로 고객과 관광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정규 영수증과 인보이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www.ctrip.com과 갑의 어플에서 체결한 전자계약은 모두 서면계약과 동등한 법적효력을 갖는다. 갑은 엄격히 갑과 을 간 약정한 제품과 서비스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와 같은 계약을 체결함을 확약한다.
2. 갑은 본 계약에 따라 을에게 구매비용을 지급해야 한다.
3. 갑은 을의 PTP 판매 대리인으로서 Ctrip.com의 여하한 특수관계사와 을 또는 을이 지정한 여하한 특수관계사 또는 기관과 직접 관련 업무제휴(PTP의 재판매 포함)를 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으나 사전에 을에게 통지해야 하고 을의 정보를 고객한테 통지하여야 한다.
4. 갑이 을의 관광 자원 아이템의 판매 대리인인점을 감안하여, 을은 Ctrip.com 또는 갑이 지정한 기타 제3자 플랫폼의 판매 채널에서 해당 제품을 판매하는데 동의한다. 을은 갑에게 관광 아이템에 포함된 여하한 서비스를 제공 및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하며, 또는 갑과 공동으로 여하한 신규 여행 프로젝트와 제품을 개발해야 하며, 양 당사자는 정산가격과 시장가격에 대해 상호 협상해야 하고 정산가격과 시장가격 간의 차액을 갑의 이익으로 하여야 한다.
5. 갑은 판매한 제품과 관련 주문절차가 을이 제공한 정보와 일치하고, 양 당사자가 약정한 방식으로 홍보하며, 여하한 관련 안내 서비스 기준과 기타 관련 주의사항을 명시함을 보증한다.

B. 을의 권리와 의무

1. 법률 인허가

- 1.1 을은 회사인감이 날인된 사업자등록증(또는 회사등록문서), 여행사 운영허가증(또는 지점등록증), 여행사 책임보험(또는 공공책임보험), 안전관리계획서 및 비상처리계획서 등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상기 문서를 수정한 경우, 을은 수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갱신된 문서를 갑에게 통보하고 제공해야 한다. 을이 위의 마감일을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제휴를 종료할 수 있다.
- 1.2 을은 적법한 사업 범위에 한하여 관광 자원 아이템 및 PTP 서비스를 제공함을 보증한다. 을 및 부속 여행사, 호텔, 레스토랑, 엔터테인먼트 아이템, 차량, 기사, 관광 가이드 및 기타 관광 서비스를 포함한 그가 지정한 모든 여행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관련 법적 인허가를 보유해야 한다. 그러지 아니할 경우, 을은 모든 법적 결과를 부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갑에게 보상한다.
- 1.3 을은 갑에게 제공된 사진, 만화 및 동영상 등 모든 자료에 대해 제3자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완전한 지식재산권을 취득함을 보증한다. 아울러, 을은 갑이 앞서 언급한 자료를 Ctrip.com, 특수관계사 마케팅 채널 및 기타 지정 플랫폼에서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권한다. 갑 또는 갑의 특수관계사에 대한 컴플레인, 신고 또는 소송이 발생한 경우, 을은 갑의 요구에 따라 적극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비침해 청구의 변론을 제공하며, 저작권 및 수권서류를 증거자료로 제시하여야 한다. 갑은 이러한 자료를 정기적으로 조사할 권리가 있다. 을은 권리 침해 제품, 사진 또는 기타 자료 또는 을이 제공한 각 위조 승인 문서에

대해 갑에게 건당 3,000 위안의 위약금을 보상한다. 동시에, 갑은 본 계약을 해지 및/또는 을에게 위약금뿐만 아니라 모든 손실과 손해배상(벌금, 보상금, 허가비용, 조사비용, 업무비용, 공증비용, 평가비용, 소송비용, 합의비용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을 요구할 수 있다.

1.4 여하한 제품 업데이트 또는 가격 변화가 있을 경우, 을은 갑에게 사전에 통지하여야 하고, 그러지 아니할 경우 모든 결과는 을이 부담한다.

1.5 을이 갑에게 제공한 제품 및 서비스의 견적서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경우, 을은 갑에게 30 영업일 전에 통지해야 한다. 조정된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낮을 경우, 기존 정산가격을 적용하고, 조정된 가격이 기존 가격보다 높을 경우, 최종 정산가격은 보충계약에서 양 당사자가 상호 합의하고 서명한 가격을 적용한다. 가격에 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할 경우 갑은 본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앞서 언급한 조정은 조정 전에 확인된 제품의 정상적인 이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자원이 부족할 경우, 을은 15일 전에 갑에게 통지하여 갑이 그에 따라 예약을 조정하고 고객에게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을은 본 조항을 준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2. 서비스 기준

2.1 을은 양 당사자가 합의한 관광 서비스 기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 당국이 정의한 관련 관광 서비스 기준도 준수하여야 한다. 양 당사자는 고객의 컴플레인을 공동으로 처리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할 것을 보증한다. 고객의 컴플레인이 을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과 관련된 경우, 을은 모든 책임을 지고 중국 국가관광국에서 발행한 품질 이슈에 대한 여행사 보상 기준에 따라 고객에게 보상해야 한다.

2.2 PTP와 관련하여, 을의 관광 가이드는 여행 가이드 인증서 착용 요건을 포함한 현지 정부 당국이 정의한 여행 가이드 행동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관광 가이드는 전문적인 윤리 지침을 준수하고, 고객의 풍습과 종교적 신앙을 존중하며, 고객에게 관광 행동 지침을 설명하고, 건강하고 문명하게 여행하도록 안내하며, 고객의 부도덕한 행동을 만류해야 한다.

2.3 을은 관련 업계의 서비스 기준 및 양 당사자가 합의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하는 사용자 가이드라인 및 애프터세일 서비스를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될 경우, 을은 모든 제품의 배송에 대해 책임을 진다. 여하한 컴플레인이나 청구는 관련 법규 및 양 당사자가 합의한 지침에 따라 처리되고 책임 당사자는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이러한 컴플레인/청구가 을에게 귀책될 경우, 을은 2 영업일 이내에 갑이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

2.4 시스템 고장 및 자원 부족을 포함한 과실이나 잘못으로 인해 갑의 고객이 을이 제공한 관광자원 아이템을 누릴 수 없는 경우, 을은 갑에 대해 시장가격의 2배에 상당하는 배상금을 보상한다. 그러한 사건이 갑 또는 그 고객에게 추가 손실을 초래하는 경우, 을은 모든 보상 책임을 부담한다. 을은 갑이 평판이나 기타 손실을 입었을 때 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이러한 사건이 제3자에게 귀책되는 경우, 을은 고객이 해당 당사자에게 보상을 청구하는데 협조해야 한다.

2.5 을은 자사의 제품이 판매될 예정이고, 해당 서비스는 www.ctrip.com, 갑의 특수관계사의 다양한 마케팅 채널 또는 갑이 지정한 제3자 플랫폼을 통해 제공될 것임을 알고 있다. 고객의 국적이 달라질 수 있기에, 을은 해당되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에 대한 국적 요건을 표시할 책임이 있다. 을은 또한 고객의 주문으로 얻은 정보와 데이터를 최소한 자신의 영업비밀 정보를 보호하는 수준으로 보호할 것을 약속하며, 필요에 따라 모든 국가 및 지역의 해당 법률 또는 규정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이와 같은 보호와 별도로, 어떠한 경우에도 을은 그가 갑의 고객에게 직접 또는 갑의 플랫폼을 통하여 발송한 통지 및 메시지(SMS 메시지, 확인서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는 어떠한 마케팅 콘텐츠도 포함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을의 위약으로 간주될 것임을 확약한다. 갑이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접수하는 경우, 을은 모든 책임과 관련 손실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2.6 을은 SMS, 이메일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갑의 고객이 갑을 거치지 아니하고 자체 또는 제3자 플랫폼에서 소비하도록 유인하여서는 아니된다.

2.7 을은“<http://vendor.package.ctripcorp.com/vendor/help/helpCenterDetail?articleId=919&directoryId=116>(“도움센터-규칙-공급업체 플랫폼 규정-업체관리 규범”)” 및 “<http://vendor.package.ctripcorp.com/vendor/help/helpCenterDetail?articleId=1099&directoryId=116>(“도움센터-규칙-공급업체 플랫폼 규정-투어&티켓 보상 표준”)”에서 자세한 고객 서비스 요구사항 및 보상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3. 여행 일정 또는 제품 변경

3.1 고객이 그들의 여행 일정 또는 제품을 해지하거나 수정하는 경우, 을은 실제 발생한 비용의 증거로서 적법하고 충분한 여행 또는 제품의 비용 영수증을 제공해야 한다. 을은 즉시 해당 취소 또는 수정에 대응되는 금액을 환불해야 하고, 고객은 이로 인해 발생한 여하한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3.2 을의 공급업체가 여행 일정 또는 관광 자원 아이템을 취소 또는 해지하는 경우, 을은 이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갑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이는 갑과 그의 고객 사이의 계약 위반으로 발생하는 위약금, 또는 www.ctrip.com에서 공표한 여하한 서비스 확약으로 인하여 고객에게 지급해야 하는 보상금/위약금,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여하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갑에게 발생한 여하한 기타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한다.

4. 안전 보증

4.1 을은 갑에게 모든 관련 필수 방문자 정보, 안전 예방조치, 모든 예정된 관광지의 놀이터 장비의 지침, 목적지 국가 또는 지역의 풍습 및 종교적 금기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관광 가이드 및 을의 기타 현지 서비스 직원은 해당 문서에 기재된 주요 내용을 구두로 공지하여야 한다. 을은 갑에게 문서화된 모든 예정된 관광지의 필수 방문자 정보, 안전 주의사항, 놀이터 장치 지침을 제공해야 하고, 갑에게 예약 정보 또는 온라인상 접근 및 다운로드 가능한 <Ctrip 관광 안전 매뉴얼>상의 주요 내용을 공개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본 조항에 대한 여하한 위반으로 인해 갑과 그 고객에게 발생한 모든 손실은 을이 배상하도록 한다.

4.2 을 및 을의 지원 서비스 제공자는 갑의 고객에게 예정 관광지 내의 여하한 관광활동 안전 지침(관련 시설에 대한 사용자 지침, 필요한 안전 예방 조치 및 긴급 조치, 아직 고객에게 오픈되지 아니한 사업장 및 시설 리스트, 관련 활동에 참가하기에 부적절한 인원 및 기타 신체 또는 재산상 손해를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을 포함)을 사전에 명시적으로 알기 쉽게 통지해야 한다. 을 또는 을의 지원 서비스 제공자가 해당 요구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을은 발생 가능한 여하한 사건의 모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4.3 신체 또는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구조조치를 취하고 고객을 위해 필요한 치료비를 대납해야 한다. 을은 즉시 갑에게 관련 내용을 보고하고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한다. 갑과 을은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고객에게 보상한다. 사고가 제3자에게 귀책될 경우, 을은 고객이 제3자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4.4 을은 완전한 안전관리시스템 및 비상처리방안을 제정해야 한다. 을은 신체 또는 재산 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필요한 구조조치를 제공하고 고객에게 필요한 치료비를 대납해야 한다. 을은 갑에게 세부 사항을 적시에 보고해야 할 뿐만 아니라 관련 증거를 수집하여 보관해야 한다. 을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갑은 상황에 대한 자체 판단에 따라 대납 또는 보상 등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을이 사고에 대해 책임져야 하는 경우, 갑은 을로부터 발생한 모든 손실을 보상 받을 권리가 있다. 제3자가 책임져야 하는 경우, 을은 갑과 그 고객이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4.5 을은 갑에게 패러글라이딩, 열기구, 행글라이딩, 낙하산 또는 헬리콥터와 같은 고공 아이템, 롤러스케이팅, 스키, 승마, 고카트, 카 레이싱 또는 대형 놀이시설 등 고속 서비스와 기타 고속 서비스, 수영, 서핑, 표류, 모터보팅, 요트 및 기타 수상 레저 시설 등 수상 서비스, 스노클링, 비치 다이빙, 보트 다이빙 및 딥 다이빙과 같은 수중 서비스, 고산 또는 협곡을 포함하는 모험, 익스트림 스포츠, 번지점프 및 암벽 등반과 같은 익스페디션 서비스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고위험 여행 아이템을 제공한다. 을은 갑의 요청에 따라 고위험 아이템에 대한 관련 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해당 문서에는 아이템 설명 및 지침, 사업자등록증, 운영허가서, 안전지침, 안전통제절차, 비상계획서(필요한 기상기준, 안전요원 절차, 응급절차, 경찰 및 병원 통지 절차 포함), 프로젝트 운영자 책임 보험 정책의 복사본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다. 을은 갑의 동의 없이 고객에게 어

한 고위험 아이템도 추천할 수 없다. 을은 고위험 여행 아이템에 의해 발생한 고객의 신체 및 재산상 손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갑 브랜드 PTP 및 기타 제품을 호스팅할 때 을의 추가 의무

5.1 을은 갑이 정한 특정 형식에 따라 관광 가이드, 차량, 호텔 및 대상 서비스 협력팀에 대한 정보를 정확하게 보고하고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해야 한다. 고객의 컴플레인인 있을 경우, 을은 관련 관광 가이드의 성명, 차량 종류, 자동차 번호 및 호텔 명칭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보고해야 한다.

5.2 을은 상호 합의된 관광 일정, 관광지 및 서비스 아이템을 엄격히 준수해야 하며, 관광 서비스를 임의로 종료하거나 고객이 쇼핑하거나 할증 품목이나 활동에 참여하도록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을은 갑의 고객과 다른 출처, 특히 다른 TOA의 고객과 함께 관광 서비스를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6. www.ctrip.com 및 갑의 어플에서 판매되는 PTP에 대한 을의 추가 의무

6.1 양 당사자 간 평등하고 서로의 이익을 위한 협력에 기초하여, 갑의 고객에 대한 가격 차별이 존재하지 아니함을 보증하기 위하여, 을은 소비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는데 동의한다. 을은 갑의 온라인 플랫폼에 있는 제품의 가격이 다른 공개 판매 채널(B2C 플랫폼, 을 자체 전자상거래 플랫폼 및 오프라인 점포를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함)보다 높지 않음을 보장한다. 여하한 불합리한 가격책정 이슈는 모두 적시에 해결되어야 한다.

6.2 갑은 을이 요구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보증금을 받는다. 고객이 국경 외에서 체류하는 상황이 발생한 경우, 갑의 책임은 을에게 관련 고객 보증금을 이전하는 범위로 제한된다. 을이 이러한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을은 그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과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을은 갑의 실제 손실 또는 행정처벌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C. 상호 보증

1. 양 당사자는 법률 및 법규에 따라 엄격하게 충분한 수량의 관련 책임보험(국내 여행사의 경우 여행사 책임보험 또는 해외 여행사의 경우 공공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보증해야 한다.

2. 양 당사자는 고객에게 적용되는 개인 사고 보험에 가입하도록 안내해야 한다.

3. 양 당사자는 고객 안전을 위협하는 항목에 대한 관련 위험 및 주의사항을 고객에게 경고하고 관련 가이드라인 및 지침을 정확하게 공개해야 한다. 여하한 긴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양 당사자는 피해발생이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4. 양 당사자 간의 확정 가격은 절대 PTP의 실제 비용보다 낮아서는 아니된다.

5. 양 당사자의 계약은 고객의 법적 권리를 침해하여서는 아니된다.

6. 일방이 본 계약을 위반하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손실을 완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7. 일방의 사유로 고객의 컴플레인이나 소송을 초래할 경우, 해당 당사자는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단독 책임을 부담한다.

제4조 정산

1. 견적정산: KRW (KRW)
2. 통화간 정산: KRW (KRW)
3. 이 계약에 포함된 견적과 정산금액은 모두 세금이 포함된 금액이다.
4. 환율 정산

갑과 을은 대금지급 월초 중국은행에서 공시한 온라인 환율을 적용하는데 동의한다.

5. 정산방법: 양 당사자 모두 월별 대금 정산방식을 채택한다.
월별 지급: 양 당사자는 사전 오는날 월간: 30일 에 정산하는데 동의한다.

매월 1일부터 오더상 귀경일자가 전월 1일부터 월말까지인 장부금액을 대조 확인하고, 쌍방이 착오가 없음을 대조 확인하고 갑이 을의 영수증을 수령한 후 30 영업일 내 정산하여 송금한다(공휴일의 경우顺延됨).

6. 을은 을이 부정확한 계좌 정보를 제공한 결과로서 지급 지연 또는 지급 실패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에 대해 책임을 진다.
7. 을은 갑에게 인보이스를 제공하며, 갑은 인보이스 수령 후 대금을 지급한다. 그러지 않을 경우 갑은 지급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을이 제공한 인보이스상의 회사명은 본 계약의 회사명과 동일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인보이스는 무효로 간주된다.

제5조 계약해지

을이 아래 사항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 여하한 공동계약을 위반할 경우, 갑은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으며, 을에게 모든 관련 손실을 보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1. 차량, 기사, 식당 또는 고위험 관광 아이템 운영자가 관련 법적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을이 본 계약의 제3조 B에 정의된 관련 안전 보증 의무를 위반하여 고객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3. 을이 협력 중에 취득한 갑의 영업비밀을 공개하는 경우.
4. 갑이 을의 과실로 인해 정부의 처벌을 받는 경우.
5. 을의 서비스 품질이 상호 합의된 서비스 기준을 3회 이상 충족하지 못할 경우.
6. 을이 고객의 컴플레인 사항을 3회 이상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경우.
7. 을이 고객 또는 갑에게 발생한 손실에 대해 부담해야 하는 책임을 2회 이상 거부하는 경우.

8. 본 계약, <씨트립 플랫폼 공급업체 관리규정> 또는 <씨트립 플랫폼 공급업체 처벌규정>에 대한 기타 심각한 위반 사항.

제6조 고객 컴플레인 해결

1. 을은 고객의 컴플레인을 현지에서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상황 및 업데이트 사항을 적시에 갑에게 알려야 한다.
2. 을은 고객 컴플레인을 해결함에 있어 갑과 적극 협조하고, 갑의 요구에 따라 필요한 입증자료를 제시해야 한다.
3. 갑과 을은 사건 상황에 따른 책임분담을 명확히 하고 그에 따라 고객에게 보상한다.
4. 을이 제공하는 여행 서비스의 품질 결함으로 인한 고객 컴플레인에 대해, 갑은 고객에게 아래 열거된 기준에 따라 보상해야 하며, 을은 갑의 요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갑에 대해 전액 보상해야 한다.
 - 4.1 양 당사자는 상호 합의된 보상 기준 또는 갑과 고객 간의 계약의 관련 조항을 참조해야 한다.
 - 4.2 위 조항에 따라 보상금을 정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여행사 서비스 품질 및 보상 기준(중국 국가관광국 발행)을 적용한다.
 - 4.3 사법적 개입이 있을 경우, 법원의 중재나 판결에 의해 명령된 보상 금액에 따라야 한다.

제7조 위약책임

1. 당사자가 본 계약에 정의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배상 당사자는 배상 받는 당사자의 서면 통보를 받는 즉시 위반 행위를 중단하고 10일 이내에 모든 관련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2. 을이 임의로 갑의 고객을 다른 TOA 출처와 결합하거나 다른 여행사로 고객을 이송할 경우, 을은 해당 단체의 정산 수수료 전액의 50%를 위약금으로 부담해야 한다. 만약 그러한 벌금이 갑에게 초래한 손실을 보상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을은 갑의 실제 손실로 그에 따라 보상해야 한다.
3. 을이 고객의 컴플레인을 현지에서 또는 서면으로 적시에 해결하지 못할 경우, 을은 관련 컴플레인을 해결하기 위하여 발생한 모든 손실을 갑에게 보상한다.
4. 을에 대한 서비스 기준 관리 규정은 갑의 Vbooking 시스템(vbooking.ctrip.com)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다. 을은 규정된 서비스 기준에 따라 해당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보증한다. 을은 갑이 Ctrip 플랫폼 관리 공급업체 규정 및 Ctrip 플랫폼 공급업체 벌칙 지침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을에게 벌칙을 부과할 권리를 가지며, 이러한 벌칙은 을의 정산대금에서 직접 공제될 수 있음을 확인한다.
5. 을은 제6조 “고객 컴플레인 해결”을 위반하여 갑 또는 갑의 고객에게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또는 허위 정보 제공, 시기적으로 부적절한 자료 또는 배상을 제공하거나 또는 배상 거부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사항으로 손실을 초래하게 될 경우,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 또한, 갑은 여하한 위약책임을 부담할 필요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제8조 불가항력

1. “불가항력”은 임의 일방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거나, 예견할 수 있다 하더라도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서, 이로 인하여 임의 일방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행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사건은 정부 조치, 지진, 태풍, 홍수, 화재 또는 기타 자연 재해, 전쟁, 공공위생사건 또는 기타 불가항력 사건을 포함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한다. 인터넷의 특성을 고려하여 불가항력에는 인터넷의 정상적인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과 같은 상황도 포함된다.

(1) 해커 공격.

(2) 전기통신부문의 기술적 조정으로 인한 중대한 영향, 단 일방의 관리부실로 인하여 조성한 손실은 불포함.

(3) 정부 통제로 인한 임시 휴업, 단 일방의 과실로 인해 정부 통제를 받은 경우는 제외함.

(4) 바이러스 공격.

2. 불가항력적인 사건이 발생한 경우,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사건의 성격, 발생일, 예상 기간 등을 상대방에게 신속하게 통지해야 하며, 해당 사건 통보 당사자가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하는 심각성을 명시해야 한다.

3. 불가항력 사건의 기간 동안,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불가항력 사건의 상태를 적시에 상대방에게 정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불가항력 사건이 종료되는 경우, 영향을 받는 당사자는 즉시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지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계속 이행해야 한다.

4.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불가항력의 영향이 해소될 때까지 제8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 후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이행을 일시적으로 중단할 수 있으며, 해당 당사자는 이에 따른 위반에 대한 책임을 부담할 필요가 없다. 다만 불가항력 사건의 영향을 받은 당사자는 최선을 다하여 해당 사건을 극복하고 이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피하거나 완화해야 한다.

5. 불가항력 또는 임의 당사자의 과실로 귀책되지 아니한 사유로 제품이 지연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적시에 고객과 협상하여 여행 또는 기타 서비스 상품을 재조정해야 한다. 이로 인해 발생한 추가 비용 및 고객이 부담하지 않은 비용은 갑과 을이 분담해야 한다.

제9조 비밀유지

1. 양 당사자는 비밀 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하기로 확약하고 서약한다. 본 계약의 비밀정보란 일방이 구두, 서면 또는 다른 방법으로 다른 일방에게 공개하는 모든 정보를 의미하며 상업적 프로그램, 고객 리스트, 기술 데이터, 제품 디자인, 개발 계획, 직원명부, 운영 매뉴얼, 기술 이론, 발명창조, 재무 상황 및 기타 제공 시 비밀정보로 합의한 자료(이하 “비밀정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 한다.

2. 본 조에 기재한 비밀정보에 대해, 당사자 및 당사자의 대리인, 대표자, 직원, 이사, 특수관계자 및 자회사는 모두 (1) 자기 자신의 비밀정보를 보호하는 수준보다 낮지 않은 수준(여하한 경우에도 합리적인 수준보다 낮아서는 아니됨)으로 보호해야 하고, (2) 비밀 정보를 취득하는 인원이 비밀을 유지하도록 요구하고, (3) 필요한 경우 양 당사자가 서면으로 합의한 방식으로만 비밀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

3. 양 당사자는 아래 정보에 대한 비밀유지 책임으로부터 면제된다.

a) 법적 경로를 통해 공개적으로 취득하거나 인지한 정보.

b) 비밀유지 책임을 위반하지 아니하고 제3자로부터 취득한 정보.

c) 법률의 요구 또는 유권 정부부문에서 법률 법규에 근거하여 내린 명령 또는 법정 절차에 따라 공개한 정보.

4. 본 비밀유지 조항은 본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 유효하다.

제10조 지식재산권

1. 본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어떠한 일방, 그 특수관계사 또는 그 직원은 본 계약의 범위를 벗어나서 어떠한 일방 또는 그 특수관계사의 회사 명칭, 상표, 브랜드 명칭, 도메인 명칭 또는 웹 사이트를 사용할 수 없으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임의 당사자도 그의 광고, 마케팅 자료, 웹 사이트 또는 어떠한 기타 간행물에서 해당 자료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여하한 권리침해 행위는 모두 피 침해 당사자로 하여금 계약을 즉시 종료할 수 있도록 한다. 권리침해 당사자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모든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2. 본 계약상의 각 당사자, 그 특수관계사 또는 그 직원은 상대방 또는 그 특수관계사의 상표, 회사명칭, 도메인 명칭 또는 어떠한 기타 내용에 대해 침해 또는 손해하지 아니하고, 상대방의 인터넷 페이지나 웹사이트를 폄하, 표절, 왜곡 또는 파괴하지 않을 것을 보증한다.

3. 양 당사자는 본 계약 기간 동안 및 본 계약 해지 또는 해제 후, 어떠한 본 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닌 자(기업, 사업 단체 및 본 계약 당사자와 사업 경쟁 관계가 있는 기관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게 양 당사자의 거래, 기술 등과 관련된 정보 또는 자료를 공개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그렇지 아니할 경우, 위반 당사자는 그에 상응하는 모든 책임을 부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제11조 뇌물 공여 금지

1. 각 당사자는 장부 외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상대방이나 여하한 제3자의 직원, 관리자 또는 직원에게 여하한 커미션, 보수 또는 중개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또는 그들에게 여하한 선물이나 대우를 제공하지 아니하며, 그들과 위에 언급한 어렌지먼트를 달성하지 아니함을 보증한다. 단, 상업관행에 부합되는 소액의 광고 선물은 제외한다. (Ctrip 제보전화: 8621-54261440, Ctrip 제보메일: jubao@trip.com).

2. 여하한 당사자가 본 조항의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 중대한 위반으로 간주한다. 상대방은 위반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동시에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취할 권리를 보유하며, 위반 당사자는 상대방의 모든 손실을 부담해야 한다.

제12조 본 계약에 대한 디지털 서명

1. 양 당사자는 본 계약이 전자 서명을 통해 개시되며 이러한 서명이 완전히 유효함에 동의한다.

2.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전자서명은 서명인을 식별하고 서명된 데이터에 대한 이면의 변경을 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서명으로 이해되고, 서명인 및 이와 같은 변경과 관련된 데이터에만 구속력을 갖고 있으며, 전자서명은 서명인이 그가 배타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이루어졌다.
3. 본 계약은 전자 서명되는 즉시 해당 민사 및 상업 법규에 따라 각자의 성격에 해당하는 가치와 법적 타당성을 갖는다.
4. 전자 방식으로 체결된 본 계약 및 그 여하한 첨부을 포함한 매체는 기일에서 서면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
5.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른 여하한 이유로 전자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단되더라도 이는 소급효력을 갖지 아니 한다.
6. 갑은 인증받은 인증 서비스 제공업체로부터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권리를 유보한다.
7. 본 계약에 대한 전자서명을 위해 사용되는 설비는 서명할 데이터나 문서를 변경하지 아니하고, 서명절차 전에 서명자에게 이를 제시하지 못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8. 을은 갑으로부터 서명 지침이 포함된 이메일을 받게 된다. 이러한 지침을 따라 을은 전자서명 페이지를 통해 문서에 액세스 할 수 있다.
9. 을의 서명자는 그가 제공한 이메일 주소를 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고 기타 인원이 액세스 할 수 없음을 보증한다.

제13조 기타

1. 본 계약 유효기간 동안 여하한 일방이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해당 일방은 상대방에게 사전 1개월 전 서면통지를 해야 한다. 양 당사자는 우호적인 협상을 통해 계약을 변경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임의 일방이 상대방의 승인 없이 본 계약을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경우, 해당 일방은 상대방의 경제 및 명예 상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
2. 본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는 본 계약의 유효 기간 동안 확인된 제품의 정상적인 이행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된다.
3. 만약 일방이 자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그의 사업이 청산 또는 종료되거나, 파산 신청을 제출하거나, 그에 대한 비자발적인 파산신청이 제기되거나, 파산 선고를 받거나, 채권자의 이익을 위해 양도하는 경우, 해당 일방은 즉시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하며, 다른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서 즉시 계약과 서비스를 종료하고 추가 위약금을 부담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여하한 일방이 본 계약의 만료일 1개월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은 양 당사자 간 새로운 메인계약을 달성하지 전까지 자동으로 연장된다.
5. 본 계약상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계약은 홍콩법을 배타적으로 적용하고 이에 따라 해석된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여하한 분쟁, 논쟁, 이견 또는 클레임(본 계약의 존재, 효력, 해석, 이행, 위반 또는 해지를 포함) 또는 본 계약으로 인하여 발생하거나 본 계약과 관련된 계약상 의무가 아닌 여하한 분쟁은 홍콩국제중재센터(HKCIAC)에 회부하여 한(1)명의 중재인이 중재통지 제출 시 유효한 HKCIAC의 규칙에 따라 홍콩에서 중재를 통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For and on behalf of
Ctrip Travel Holding (Hong Kong) Limited

갑: Ctrip Travel Holding (Hong Kong) Limited	을: TK TRAVEL
대표자:JIHUN PARK	대표자: KANG ILGOO
직무: 지역 매니저	
주소: FLATRM 3012 30F PAUL Y.CENTRE NO.51 HUNG TO ROAD KWUN TONG HONG KONG	주소: 5F, 39, Sinimun-ro, Dong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휴대폰: (008621) 34064880	휴대폰:82-1083016266
이메일:jihun.park@trip.com	이메일: reserve@tktravelkorea.com
재무대표: \	재무대표:LIM BYUNG NAM
연락번호: (008621) 34064880	휴대폰: 82-1082555729
	이메일: reserve@tktravelkorea.com
	계좌개설은행:KOOKMIN BANK
	계좌번호:99919107950
계좌명: Ctrip Travel Holding (Hong Kong) Limited	계좌명:TK TRAVEL
	계좌개설은행 주소:109,hangang-daero, Yongsan- Gu,Seoul,Korea
	SWIFT Code: CZNBKRSE

첨부:

확약서

보다 훌륭하고 안전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을은 다음과 같이 확약한다:

- 을은 을이 제공하는 모든 차량팀/차량 운영자가 현지 규정에 따라 요구되는 적법한 자격증 또는 면허를 보유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모든 운영 차량은 모두 자동차 사고 의무보험, 제3자 책임보험, 승객 보험 또는 기타 유사 보험 등을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 필요한 자동차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약한다. 갑은 임의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 을이 면허 또는 자격증을 제공할 수 없거나 확약서에 서명을 거부한 경우, 양 당사자간 합작은 해지되고 관련 제품 또는 서비스는 오프라인 처리한다.
- 을은 모든 계약체결 운전기사를 확인할 책임이 있고 갑의 오더를 신체 상해 또는 범죄기록, 또는 신체 상해 행위 관련 컴플레인 기록이 있는 기사에게 배당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고객으로부터 신체 상해와 같은 클레임이 제기되는 경우, 갑은 을이 해당 컴플레인을 접수한 후10분 이내로 조사 확인하도록 요구한다. 을이 갈등을 해결할 수 없는 경우, 을은 고객의 동의를 거친 후 고객을 협조하여 최대한 빨리 경찰에 연락하여야 하고, 갑에게 관련 경찰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 신체 상해 관련 악성 사건이 발생하여 해당 사건에 대해 중국 또는 현지 경찰 또는 대사관에서 이미 조사를 진행한 경우, 양 당사자는 즉시 기사, 차량팀 및 승객의 관련 정보를 경찰에 제공하고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6. 을 또는 을측 기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 교통사고 또는 폭력, 강간, 기타 악성 상해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 아니한 악성 신체 상해 사고가 발생한 경우, 을이 상응한 보험에 가입하였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을은 이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을 무조건 부담하여야 한다. 갑에게 손실을 초래한 경우, 을은 마찬가지로 상응한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7. 본 확약서는 을의 수권대표가 서명 또는 날인한 일자에 체결 및 교부되었다. 스캔본과 원본은 모두 동등한 법적효력을 가진다.

을(날인):



수권대표 서명:KANG ILGOO

날자: 2022-11-28

Data Transfer Addendum – Independent Controllers

This data transfer addendum (“**Addendum**”) is made between:

- 1) Ctrip Travel Holding (Hong Kong) Limited incorporated and registered in China whose registered office is at FLAT/RM 3012 30/F PAUL Y.CENTRE NO.51 HUNG TO ROAD KWUN TONG HONG KONG acting on its own behalf and as agent for each of its Affiliates (“**Trip.com**”); and
- 2) TK TRAVEL incorporated and registered in Republic of Korea whose registered office is at 5F, 39, Sinimun-ro, Dongdaemun-gu, Seoul, Republic of Korea acting on its own behalf and as agent for each of its Affiliates (“**Company**”),

Each a “**party**” and together the “**parties**”.

BACKGROUND

- a) The parties entered into 2022-11-28 to 2024-11-27 (“**Master Agreement**”).
- b) The parties hereby agree that this Addendum shall form part of the Master Agreement. Except as modified below, the terms of the Master Agreement shall remain in full force and effect.

AGREED TERMS

1.DEFINITIONS

Affiliate: in relation to either party, a subsidiary of that party or a holding company of that party or any other subsidiary of that holding party.

Agreed Purposes: the purpose of each party performing their obligations under, and receiving the benefits of, the Master Agreement.

Controller, processor, data subject, personal data, personal data breach, processing and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sational measures: as set out in th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in force at the time.

Data Discloser: a party that discloses Shared Personal Data to the other party.

Data Protection Legislation: means the GDPR and the Directive on Privacy and Electronic Communications 2002/58/EC and any national data protection laws and regulations enacted under those laws or otherwise, and any successor laws and regulations as amended from time to time and any and all other applicable laws relating to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privacy that are applicable to the processing of personal data in connection with the Master Agreement including, where applicable, the guidance and codes of practice issued by supervisory authorities;

EEA: European Economic Area.

GDPR: means Regulation (EU) 2016/679 (the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Permitted Recipients: the parties to this Addendum and their Affiliates, the employees of each party and any third parties engaged to perform obligations in connection with this Addendum and/or the Master Agreement that require access to the Shared Personal

Data.

SCC: the European Commission's Standard Contractual Clauses for the transfer of personal data from the European Union to third countries (controller-to-controller transfers), as set out in the Annex to Commission Decision 2004/915/EC, as the same are revised or updated from time to time by the European Commission.

Shared Personal Data: the personal data to be shared between the parties under clause 2.1 of this Addendum. Shared Personal Data shall be confined to the following categories of personal data:

Type of personal data – those personal data as required to deliver the services under the Agreement,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name, address, contact details.

and relevant to the following categories of data subject:

Type of data subject – customers of Trip.com and Company's products or servic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ervice provided via Trip.com or any other distribution channels of each party); employees of each party.

2.DATA PROTECTION

2.1 Shared Personal Data. This clause sets out the framework for the sharing of personal data between the parties as independent controllers. Each party acknowledges that one party (the "Data Discloser") will regularly disclose to the other party Shared Personal Data collected by the Data Discloser for the Agreed Purposes.

2.2 Effect of non-compliance with Data Protection Legislation. Each party shall comply with all the obligations imposed on a controller under th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and any material breach of th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by one party shall, if not remedied within 30 days of written notice from the other party, give grounds to the other party to terminate the Master Agreement with immediate effect.

2.3 Particular obligations relating to data sharing. Each party shall:

- (a) ensure that it has all necessary notices and consents in place to enable lawful transfer of the Shared Personal Data to the Permitted Recipients for the Agreed Purposes;
- (b) give full information to any data subject whose personal data may be processed under this Addendum of the nature such processing;
- (c) process the Shared Personal Data only for the Agreed Purposes;
- (d) not disclose or allow access to the Shared Personal Data to anyone other than the Permitted Recipients;
- (e) ensure that all Permitted Recipients are subject to written contractual obligations concerning the Shared Personal Data (including obligations of confidentiality) which are no less onerous than those imposed by this Addendum;
- (f) where it appoints a third party processor to process any Shared Personal Data it receives from the other party, comply with Article 28 and Article 30 of the GDPR.
- (g) ensure that it has in place appropriate technical and organisational measures to protect against unauthorised or unlawful processing of personal data and against accidental loss or destruction of, or damage to, personal data.
- (h) where a party is based in the EEA, not transfer any Shared Personal Data to any third party outside the EEA unless the transferor:
 - (i) complies with the provisions of Articles 26 of the GDPR (in the event the third party is a joint controller); and
 - (ii) ensures that (i) the transfer is to a country approved by the European Commission as providing adequate protection pursuant to Article 45 of the GDPR; or (ii) there are appropriate safeguards in place pursuant to Article 46 GDPR; or (iii) Binding corporate rules are in place or (iv) one of the derogations for specific situations in Article 49 GDPR applies to the transfer.

2.4 Cross-border transfers of personal data. If any personal data transfer between the parties requires execution of the SCC in order to comply with th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the parties hereby enter into the SCC, which are incorporated into this Addendum by reference. For the purposes of clause II h) of the SCC, the parties shall be deemed to have selected option (iii). Annex B to the SCC shall be deemed to be prepopulated with the details in this Addendum.

2.5 Mutual assistance. Each party shall assist the other in complying with all applicable requirements of th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In particular, each party shall:

- (a) promptly inform the other party about the receipt of any data subject access request in relation to Shared Personal Data it receives from the other party;
- (b)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reasonable assistance in complying with any data subject access request in relation to the Shared Personal Data;
- (c) not disclose or release any Shared Personal Data it receives from the other party in response to a data subject access request without first consulting the other party wherever possible;
- (d) assist the other party, at the cost of the other party, in responding to any request from a data subject and in ensuring compliance with its obligations under th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in relation to the Shared Personal Data with respect to security, personal data breach notifications, data protection impact assessments and consultations with supervisory authorities or regulators;

- (e) notify the other party without undue delay on becoming aware of any breach of th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in relation to any Shared Personal Data it receives from the other party;
- (f) at the written direction of the Data Discloser, delete or return Shared Personal Data and copies thereof to the Data Discloser on termination of this Addendum unless required by law to store the personal data;
- (g) use compatible technology for the processing of Shared Personal Data to ensure that there is no lack of accuracy resulting from personal data transfers;
- (h) maintain complete and accurate records and information to demonstrate its compliance with this Addendum; and
- (i) provide the other party with contact details of at least one employee as point of contact and responsible manager for all issues arising out of th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3.LIABILITY

3.1 Each party shall be fully liable to the other party for the acts and/or omissions of any third party it engages to perform its obligations in connection with this Addendum.

3.2 Each party shall indemnify the other against all liabilities, costs, expenses, damages and losse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ny direct, indirect or consequential losses, loss of profit, loss of reputation and all interest, penalties and legal costs (calculated on a full indemnity basis) and all other reasonable professional costs and expenses) suffered or incurred by the indemnified party arising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e breach of the Data Protection Legislation by the indemnifying party, its employees, Affiliates or agents, provided that the indemnified party gives to the indemnifier prompt notice of such claim, full information about the circumstances giving rise to it, reasonable assistance in dealing with the claim and sole authority to manage, defend and/or settle it. The liability of the indemnifying party under this clause shall be subject to the greater of the limit set out in Master Agreement or USD \$1,000,000.

4.TERM AND TERMINATION

4.1 This Addendum shall come into effect on the effective date of the Master Agreement and, subject to clauses 2.2, shall terminate in accordance with the Master Agreement.

5. GENERAL

5.1 This Addendum is drafted in the English language, if it is translated into any other language, the English language version shall prevail.

5.2 This Addendum is supplemental to the Master Agreement, and shall replace any existing provisions relating to the protection of personal data, other than any descriptions of processing. In the event of inconsistencies between this Addendum and the Master Agreement, the provisions of this Addendum shall prevail. In the event of any inconsistencies between this Addendum and the SCC (if entered into between the parties in accordance with clause 2.4), the provisions of the SCC shall prevail. In each case, any inconsistencies shall be construed so as to give the maximum possible protection to data subjects.

5.3 A waiver of any right or remedy under this Addendum or by law is only effective if given in writing and shall not be deemed a waiver of any subsequent right or remedy. A failure or delay by a party to exercise any right or remedy provided under this Addendum or by law shall not constitute a waiver of that or any other right or remedy, nor shall it prevent or restrict any further exercise of that or any other right or remedy. No single or partial exercise of any right or remedy provided under this Addendum or by law shall prevent or restrict the further exercise of that or any other right or remedy.

5.4 If any provision or part-provision of this Addendum is or becomes invalid, illegal or unenforceable, it shall be deemed modified to the minimum extent necessary to make it valid, legal and enforceable. If a party does not have actual authority to sign on behalf of its Affiliates, then this Addendum shall remain valid and in force as between the other parties to this Addendum.

5.5 This Addendum may be executed in any number of counterparts, each of which when executed and delivered shall constitute a duplicate original, but all the counterparts shall together constitute one agreement. Transmission of an executed counterpart of this Addendum (but for the avoidance of doubt not just a signature page) by email (in PDF, JPEG or other agreed format) shall take effect as delivery of an executed counterpart of this Addendum. No counterpart shall be effective until each party has executed and delivered at least one counterpart.

5.6 The governing law for this Addendum, and the court with jurisdiction to settle any dispute or claim (including non-contractual disputes or claims) that arises out of or in connection with this Addendum or its subject matter or formation, shall be as set out in the Master Agreement.

IN WITNESS WHEREOF the parties have executed this Addendum

Signed for an on behalf of Ctrip Travel Holding (Hong Kong) Limited

Director/Authorised Signatory

Name :

Signed for an on behalf of TK TRAVEL

Director/Authorised Signatory

Name : KANG ILGOO

